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7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변상금의 부과시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등을 위탁계약시에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제2항).
- 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 라. 2층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함 (안 제25조제2항).
- 마. 사용허가·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함 (안 제25조의2).
- 바.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추가함 (안 제28조제2항).
- 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안 제28조의2).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0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제78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8조, 제92조, 제100조, 제100조의3, 제105조, 제107조
- 건축법 제49조
- 건축법시행령 제80조
- 하천법 제3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1. 26. ~ 2002. 2. 5.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개정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문)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 나. 일반시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 다.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이상으로”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이상으로”로 하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로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정수한다.

⑪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의 본문중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로는 총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만기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때의 예금이자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 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대부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 (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 ①시장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등”으로 하고, 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제5항제3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을 “시지역”으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며,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와 시이외의 자가 공유한 재산으로서 시의 지분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 는 200제곱미터이하, 일반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 는 700제곱미터이하인 재산을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5.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 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재무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무과장 김진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담당 변한식
	담당자 성명·전화	김선미 (행정 2174)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전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p> <p>① <u>지방재정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p> <p>⑤ (생략)</p> <p>제7조 (시공유재산심의회) ① <u>지방재정법</u>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삭제 1999. 12. 31></p>	<p>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p> <p>① 법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 (시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 -----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p>

식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u>행정재산</u>은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u>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u></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3. 군지역 : 일단의 면적이 900제곱미터이하 토지</p> <p>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p> <p>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 ----- <u>행정재산·보존재산</u>----- ----- ----- <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u>행정재산</u>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②<u>행정재산</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p>	<p>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u>행정재산·보존재산</u>----- ----- ----- ----- ②<u>행정재산·보존재산</u>----- ----- 1. (현행과 같음)</p>

식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생략)</p> <p>제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p> <p>제14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볼여야 한다.</p> <p>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p> <p>1. ~ 3. (생략)</p> <p>4. <u>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u></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 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u></p>	<p>〈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p> <p>-----</p> <p>-----</p> <p>-----</p> <p>-----</p> <p>제14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p> <p>-----</p> <p>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행정재산·보존재산</p> <p>-----</p> <p>제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u></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가 자급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삭제〉</p>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 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② ~ ③(생략)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 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1000분의 25</u>로 한다.</p> <p>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으로 한다.</p> <p>③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90.11.10> 2. <삭제 '90.11.10>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u>.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 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 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 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 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40</u>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⑤ (생략) 	<p>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p> <p>-----</p> <p>-----</p> <p><u>1000분의 50이상</u>-----</p> <p>-----</p> <p>-----</p> <p><u>1000분의 25이상으로</u>-----</p> <p>②-----</p> <p>-----</p> <p>----- <u>1000분의 10이상</u>-----</p> <p>③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u>1000분의 50이상으 로</u>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 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 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 수한다.</p> <p>④-----</p> <p>-----</p> <p><u>1000분의 40이상</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25</u>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으로 한다.</p> <p>⑦ ~⑩ (생략)</p> <p><u><신설></u></p>	<p>⑥-----</p> <p>-----</p> <p>-----</p> <p>----- <u>1000분의 25이상으로</u>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p> <p>----- <u>1000분의 10이상</u> -----</p> <p>⑦ ~⑩ (현행과 같음)</p> <p>⑪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영 제8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이상으로</u> 한다.</p>
<p>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p> <p>① (생략)</p> <p>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조정할 수 있다.</p> <p>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u>1000분의 10</u>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p>	<p>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p> <p>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 (생략)</p> <p>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 -----<삭제> ----- ----- ----- ----- 1. ~ 3. (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p> <p>----- ----- ----- 1. ~ 6. (현행과 같음)</p> <p><u>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u></p> <p><u><신설></u></p> <p>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신 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만기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때의 예금이자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p> <p>③ <삭 제></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삭 제></p>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대부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p> <p><u>제28조의2 (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 ① 시장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p><u>③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u></p> <p>① ~ ② (생 략)</p> <p>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 (<u>하천법 제25조</u>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u>제39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등)</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하천법 제33조</u> ----- ----- ----- ----- ----- -----</p>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신설></u></p>	<p>4. 시와 시이외의 자가 공유한 재산으로 <u>서 시의 지분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읍· 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인 재 산을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u></p>
<p><u><신설></u></p>	<p>5.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 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 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p>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27
------------	------

제안년월일 : 2002. 2. 23.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 제 안 이 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에 따른 조문 적용 표현을 명확히 하고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점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행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28조 제4항 중 “시장은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시장은 제23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산을”로 수정함.
-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8조의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시장은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시장은 제23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산을”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점유자는” 다음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이내에”를 삽입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생략) ③(생략) ④<u>시장은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대부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원안과 같음) ③(원안과 같음) ④<u>시장은 제23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산을.....</u></p>
<p>제28조의2(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① (생략) 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첨유자는 (삽입)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p>제28조의 2(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① (원안과 같음) ②.....<u>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u></p>